

(재)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 
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제의연월일	2026. 1. .
제 의 자	의 장

# (재)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

의 안 번호	
-----------	--

제의연월일: 2026. 1. .

제 의 자: 의 장

## 1. 제의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제4조에 따라 (재)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선임함.
- 위원 1인은 의장이 추천함.
- 위원 2인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추천함.
- 위원 2인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추천함.
- 위원 2인은 문화환경위원장이 추천함.

## 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 제4조

(재)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 
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(안)

(재)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
○ 위원 명단

(성명 가나다 순)

소속 상임위원회	성 명	비 고
	7명	
기획행정위원회 (2)	김 민 성 김 정 도	
산업건설위원회 (2)	소 진 혁 정 지 원	
문화환경위원회 (3)	김 영 길 김 영 태 추 은 희	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「구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

제4조(인사청문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시장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미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이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<개정 2024.10.2.>

1. 의장이 추천하는 1인
2.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회별 2인이내(단,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.)

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-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폐회·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된 때까지로 한다. <개정 2024.10.2.>
-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.
-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